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요기획 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업무체계 정비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임.

3.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 (안 제22조제1항)

- 1) 장기간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기술 부족으로 인한 개발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획 시 ‘필요한 경우’ 작전운용성능을 점차 발전시키는 방안(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적용사항이므로 실효성 미흡
- 2) 따라서, 소요제기 및 결정 시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소요기획 단계부터 진화적 획득 적용을 제도화

나. 방산물자 지정범위 규정 시 ‘핵심기술’의 의미 명확화 (안 제40조제1항)

- 1) 방산물자는 완제품·구성품 단위 지정이 원칙이며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합체나 부분품 단위 지정이 가능한데,

현행 규정상 ‘핵심기술’의 인정범위가 불명확

- 2) 따라서, 예외 적용대상인 핵심기술의 의미를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된 기술’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도 예외 적용에 추가

다. 정비능력 개발업체와의 방위사업 수의계약 근거 마련 (안 제61조제3항)

- 1) 무기체계 국산화 및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해외정비품을 국내정비로 전환 추진 중이나, 국내정비능력을 연구개발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비능력 개발 유인 제공에 한계
- 2) 따라서 해외정비품에 대한 국내 정비능력 연구개발업체와의 정비 계약을 방산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라. 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 예외 확대 (안 제66조제1항)

- 1) 현재 군용화약류만 일정량 미만에 대해 제조, 저장, 운반 등의 방사 청장 허가 예외를 규정하고 군용총포·도검에 대한 예외는 없어 행정상 불편 야기
- 2) 군용총포·도검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마.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체계 정비 (안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 1) 무기체계 운용성향상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의 안전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단순 개량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
- 2) 따라서, 방사청이 국과연 및 기품원에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 및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개량의 세부절차를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바. 군수품 형상관리 업무의 기품원 위탁범위 확대 (안 제71조제2항)

- 1) 첨단전력 확대 및 기술발전 가속화로 개발 이후 단계에서도 군수품의 기술변경 (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규격 적합성 검토 등 형상관리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 요구 증대
- 2) 따라서, 양산·운용유지 단계의 군수품에 대한 형상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품원에 대한 형상관리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핵심기술”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제6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 대상 품목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능력 연구개발을 완료한 국내업체와 해당 정비능력 개발 품목에 대한 정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중 “군용화약류”를 “군용총포등”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업무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사업관리 등

제71조제2항제2호나목 중 “따른 형상내용의 통제에 관한”을 “따른”으로,
“군수품(제3호나목에 따른 검사조서 발급 대상으로 한정한다)”을 “군수
품”으로, “형상내용의 통제”를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통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업무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사업관리 등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 --(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 ----- -----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신 설>

2. (생략)

② ~ ④ (생략)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

-----.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
--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양(量) 미만의 군용화약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행위(제5호에

-----.

1. ~ 7. (현행과 같음)

8.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 대상 품목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능력 연구개발을 완료한 국내업체와 해당 정비능력 개발 품목에 대한 정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

----- 군용총포
등에 -----

따른 수입·수출은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탁) ①방위사업
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방
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2. 삭 제

3.·4. (생 략)

<신 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삭 제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
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의 관리
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 략)

나.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제3호나
목에 따른 검사조서 발급

-----.

제71조(권한의 위탁) ①-----

-----.

3.·4. (현행과 같음)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
개량 업무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사업관리 등

②-----

-----.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따른

----- 군수품-----

<u>대상으로 한정한다)의 작</u> <u>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u> <u>일정 및 비용 등에 영향을</u> <u>미치지 아니하는 설계상</u> <u>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형</u> <u>상내용의 통제</u> 3. ~ 8. (생략) <u><신설></u>	----- ----- ----- ----- ----- 형 <u>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u> <u>통제</u> 3. ~ 8. (현행과 같음) 9. <u>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u> <u>개량 업무 중 방위사업청장이</u> <u>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u> <u>사업관리 등</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79